

#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최 영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한 정 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남 구

☎ 문의사항 : ☎ (044) 204-3137~9

■ 차례 ■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01. 금융투자소득 신설	86
0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87
03. 금융세제 정의 규정	89
04.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90
05.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91
06. 금융투자소득 세액계산의 순서	92
07.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93
08.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94
09.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95
10. 파생상품소득의 손실공제 제한	96
11.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	97
12.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98
13.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99
14.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특례	100
15.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	101
16.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	103
17. 기준시가의 산정	105
18.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및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	106
19.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107
20.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	108
21.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	109
22.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	111
2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112
24.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113
25.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114
26.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16
27.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17
28.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18
29.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	119

##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 ☞ 주요 개정 내용

- 금융투자소득 신설
-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특례
-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 2020.12.29.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 2021.2.17. 공포

01



금융투자소득 신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 도입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중립성을 확보
  - \*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소득은 과세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통한 실질소득에 과세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득의 구분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 신설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5px 0;">(좌 동)</div>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 <input type="checkbox"/>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의2, 제150조의7)

가. 개정취지

○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에 맞게 분배금 및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의 소득구분

- \*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 집합투자증권 양도·환매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p> <p>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p> <p>②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평가손익은 유보 가능</p> <p>③ 금전으로 위탁·환급</p> <p><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소득 구분</p> <p>○ 적격 집합투자기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계약형*</th> <th colspan="2" style="width: 70%;">회사형**</th> </tr> <tr> <th colspan="2">분배·환매</th> <th colspan="2">배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양도</td> <td rowspan="2"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국내 상장</td> <td>주식형 ETF</td> <td>과세 제외</td> <td>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과세 제외</td> </tr> <tr> <td>기 타</td> <td>배당</td> <td>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과세 제외</td> </tr> <tr> <td colspan="2">비상장</td> <td>배당</td> <td>양도</td> </tr> <tr> <td rowspan="2"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국 외</td> <td>등록</td> <td>배당</td> <td>양도</td> </tr> <tr> <td>미등록</td> <td>양도</td> <td>양도</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 책임회사</p>	구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환매		배당		양도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과세 제외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과세 제외	기 타	배당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과세 제외	비상장		배당	양도	국 외	등록	배당	양도	미등록	양도	양도	<p><input type="checkbox"/> 신고요건 추가</p> <p style="margin-left: 20px;">(좌 동)</p> <p>④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p> <p><input type="checkbox"/> 소득 구분 개편</p> <p>○ 국내 적격 집합투자기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60%;">구분</th> <th style="width: 40%;">소득</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분배</td> <td>원천 : 금융투자소득</td> <td>금융투자소득</td> </tr> <tr> <td>원천 : 금융투자소득 외</td> <td>배당</td> </tr> <tr> <td>환매·양도</td> <td>금융투자소득</td> </tr> </tbody> </table>	구분	소득	분배	원천 :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원천 : 금융투자소득 외	배당	환매·양도	금융투자소득
구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환매		배당																																			
양도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과세 제외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과세 제외																																	
		기 타	배당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과세 제외																																	
	비상장		배당	양도																																	
	국 외	등록	배당	양도																																	
미등록		양도	양도																																		
구분	소득																																				
분배	원천 :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원천 : 금융투자소득 외	배당																																			
환매·양도	금융투자소득																																				

종 전				개 정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구 분	소 득	
분배·환매	소득원천별 과세 (도관과세)	배 당		분 배	배 당	
양도		장내	대주주	양도	환매·양도	금융 투자소득
		장외	소액 주주	과세 제외		
		양 도				
○ 국외 집합투자기구				○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구 분	소 득	
분배·환매	배 당			분 배	배 당	
양 도	배 당	양 도		환매·양도	금융투자소득	
□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평가손익은 과세제외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3



금융세제 정의 규정

(소득세법 8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2, 제150조의3, 제150조의4)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개념 규정

\* 자본시장법을 준용하되, 현행 세법상 과세대상의 차이를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등) 「자본시장법」 §4④ 지분증권, 「자본시장법」 §4⑧ 증권예탁증권으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증권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 §9②에 따른 집합투자증권</li> <li>· 「소득세법」 §94①4에 따른 부동산 관련 주식</li> </ul> </li> </ul> </li> <li>○ (채권등) ① 「자본시장법」 §4③ 채무증권, ② 「자본시장법」 §4⑧ 증권예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증권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li> <li>·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li> </ul> </li> </ul> </li> <li>○ (양도) 자산의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양도로 규정</li> </ul> </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4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소득세법 제87조의3)

가. 개정취지

-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소득 <input type="checkbox"/>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input type="checkbox"/>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5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5)

가. 개정취지

- 결손금 이월공제를 통해 실질소득에 과세하여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및 공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기간) 5년</li> <li>○ (공제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li> <li>②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 미적용</li> </ul> </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6



금융투자소득 세액계산의 순서

(소득세법 제87조의5)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①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세율 ②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③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87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6)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이자·배당소득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의 범위</p> <p>①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p> <p>②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p> <p>③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 §4⑥)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p> <p>④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소득</p> <p>⑤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법」 §4⑦)으로부터의 이익</p> <p>⑥ 파생상품(「자본시장법」 §5)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8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8)

가. 개정취지

-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수입시기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금을 청산한 날</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금을 청산한 날 (양도)</li> <li>- 이익을 지급받은 날 (환매·해지·해산)</li> </ul> </li> <li>○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금융투자소득에서 분배받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익을 지급받은 날</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익을 지급받은 날</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대거래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손익이 확정된 날</li> <li><small>*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small></li> </ul> </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9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9)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 같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소득과 손실을 우선 합산하고 비과세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공제 제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방법</p> <p>○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집합투자기부·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소득금액(손실금액)을 ①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합산</p> <p>- ① &lt; 0, ② &lt; 0 : 금융투자결손금</p> <p>- ① &gt; 0, ② &lt; 0 또는 ① &lt; 0, ② &gt; 0 :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p> <p>- ① &gt; 0, ② &gt; 0 : 금융투자소득금액(단, 구분하여 관리)</p>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감면 소득의 손실금액 계산</p> <p>○ 비과세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p> <p>○ 감면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파생상품소득의 손실공제 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0)

가. 개정취지

- 파생상품은 증권과 달리 투자손실의 한도가 없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input type="checkbox"/> 계약종료 시점에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시 불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8~12,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11~15)

가. 개정취지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주식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의제취득가액 도입

\* 소득금액은 계좌별로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등소득금액 = 주식등양도가액 - 필요경비</li> <li>○ 채권등소득금액 = (채권등양도가액 - 보유기간 이자) - 필요경비</li> <li>○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 필요경비</li> <li>○ 같은 계좌에서 양도하는 같은 자산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양도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li> <li>○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필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가액</li> <li>○ 자본적 지출액(취득 이후 소송비용 등), 양도비, 증권거래세 등</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22.12.31. 기준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및 K-OTC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li> <li>○ (가액) Max('22.12.31. 기준 최종시세가액, 실제 취득가액)</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취득가액 평가방법(계좌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이동평균법</li> <li>○ (채권) 개별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선택(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법)</li> <li>○ (투자계약증권) 개별법</li> </ul> </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87조의13,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16)

가. 개정취지

- 조세회피 방지 및 실질과세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li> <li>○ (취득가액 조정)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li> <li>○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li> <li>○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 특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① + ②</b></li> <li><b>①</b>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li> <li><b>②</b>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li> </ul> </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14,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17)

가. 개정취지

-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및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 계산방법 규정

\* 자본시장법상 기준가격을 통해 소득금액 계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 ① + ②</p> <p><b>①</b>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 · 주수) - 각종 보수 · 수수료</li> <li>○ 좌당 양도소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식형ETF · 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 환매 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 · 분배 직후 기준가격</li> <li>② 기타 : 환매 시 기준가격 - 매수 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 · 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li> <li>③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 :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li> </ul> </li> </ul> <p><b>②</b>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당 분배소득금액 × 결산 · 분배시 보유 좌수 · 주수) - 각종 보수 · 수수료</li> <li>○ 좌당 분배소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식형ETF · 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 좌당 분배금액 중 금융투자소득</li> <li>② 기타 : 결산 시 기준가격 - 매수 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 · 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한도 : 투자자에게 실제 분배되는 금융투자소득금액)</li> </ul> </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8,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9)

가. 개정취지

- '22년 말까지 비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23년 이후 실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도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 '22.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p> <p>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A - (B - C)</p> <p>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p> <p>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p> <p>C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p> </div> <p>② 기타 집합투자증권(①, ③ 제외)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매수 시 기준가격 = A - (B - C ± D)</p> <p>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p> <p>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p> <p>C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p> <p>D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과세손익</p> </div> <p>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상장투자회사 :</p> <p>Max(A - (B-C), 실제 취득가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p> <p>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p> <p>C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p> </div> <p>* 단, 국내주식형ETF 및 상장투자회사의 경우 (B-C)를 0으로 함</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

(소득세법 제87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19, 제150조의20,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10)

가. 개정취지

- 실제 발생한 소득에 따라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규정
- '22년 말까지 비과세되는 ETN 이익에 대해 '23년 실현시에도 비과세될 수 있도록 의제취득가액 도입
  - \* ELS, DLS, ELW는 현재도 과세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li> </ul> <input type="checkbox"/>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 양도 등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의 수) - 각종 보수·수수료</li> <li>○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장지수증권(ET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시장에서 매도 :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li> <li>- 그 외 : 양도시 등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li> </ul> </li> <li>② 주식워런트증권(EL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 또는 최종거래일 종료로 소멸하는 경우</li> </ul> </li> </ul> </li> </ul>

종 전	개 정
<p>〈신 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p> <p>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p> <p>B : 증권의 행사가격</p> <p>C :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1</p> <p>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 규정에 따른 전환비율</p> <p>E : 증권의 매수가격</p> </div> <p>③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매도가격(상환금액) - 실제 매수가격</li> </ul> <p><input type="checkbox"/>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분배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li> <li>○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li> </ul> <p><input type="checkbox"/> '22.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의제취득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x(A - (B-C), 실제 취득가액)</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p> <p>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p> <p>C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p> </div> <p>* 단, 국내주식형ETN의 경우 (B-C)를 0으로 함</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16,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11)

가. 개정취지

- 파생상품 성격에 맞게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규정

\* 장외파생상품은 상대계약이므로 계약에 따라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방법</p> <p>○ 선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소득금액 = (A × C + B × C) × D</p> <p>A :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p> <p>B :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p> <p>C : 매도계약(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은 1,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은 -1</p> <p>D : 거래승수</p> </div> <p>○ (선도)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 - 지급하는 금전</p> <p>○ (옵션) 반대거래상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소득금액 = (A × C + B × C) × D</p> <p>A :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p> <p>B : 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p> <p>C : 매도계약은 1, 매수계약은 -1</p> <p>D : 거래승수</p> </div>

종 전	개 정
<p>〈신 설〉</p>	<p>○ (옵션) 권리행사·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 소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소득금액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p> <p>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p> <p>B : 해당 옵션의 행사가격</p> <p>C : 콜옵션은 1, 풋옵션은 -1</p> <p>D :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p> <p>E : 거래승수</p> <p>F : 매수계약 소멸은 1, 매도계약 소멸은 -1</p> </div> <p>○ (스왑) 과세기간에 수취하는 금전 - 지급하는 금전</p> <p>□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 = ① + ②</p> <p>① 위탁매매 수수료</p> <p>② 투자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7

기준시가의 산정

(소득세법 제87조의17,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22, 150조의23,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12)

가. 개정취지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등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주식등의 기준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주식)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단, 정지·관리대상 코스닥·코넥스 주식*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주식</li> </ul> </li> <li>○ (비상장 및 정지·관리대상 코스닥·코넥스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 : 2로 가중평균한 가액</li> <li>○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사채발행이율, 적정할인율 등을 감안한 평가액</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채권등의 기준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증세법」 §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기준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결합증권)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비상장)</li> <li>○ (파생상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을 감안한 평가액(비상장)</li> </ul> </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및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

(소득세법 제87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24·26,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13)

가. 개정취지

- 상장주식 및 상장주식형 펀드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 5,000만원 * 기타 금융투자소득 : 250만원</li> <li><input type="checkbox"/>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본시장법」상 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li> <li>② 집합투자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상장주식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국내상장주식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내상장주식</li> <li>② 국내주식형 ETF 및 상장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가 다른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①, ②에 투자시 투자금액 계산</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투자금액 = A + B</p> <p>A : 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①, ②의 가액</p> <p>B : 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가액 × (다른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①, ②의 가액 ÷ 다른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p> </div>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87조의19)

가. 개정취지

- 조세중립성,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2단계 세율 구조 설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주식양도소득세 세율</li> <li>○ 대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미만 보유 非중소기업 주식 : 30%</li> <li>- 일반 :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li> </ul> </li> <li>○ 소액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주식 : 10%</li> <li>- 일반 : 20%</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펀드 환매·파생결합증권 이익 등 배당 소득세 세율</li> <li>○ (2천만 원 초과) 14~42%</li> <li>○ (2천만 원 이하) 14%</li> <li><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li> <li>○ 20% (탄력세율 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세 세율</li> </ul>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p> <p>(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p> </div>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

(소득세법 제87조의20)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시 계산방법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액 계산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text{감면액} = \text{A} \times \frac{(\text{B} - \text{C})}{\text{D}} \times \text{E}</math> </div> <p>                     ①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②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④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⑤ 감면율                 </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

(소득세법 제87조의21, 제87조의22,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27, 제150조의28, 제150조의29)

가. 개정취지

- 납세의무 확정 및 납세절차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 및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①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②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li> <li>○ (방법)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li> <li>○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li> <li>ii)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담부증여 채무액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 :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li> </ul> </li> </ul> </li> <li>□ 예정신고 및 납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li> </ul> </li> <li>○ 금융투자결손금신고서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li> </ul> </li> </ul>

종 전	개 정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예정신고 산출세액</p> <p><input type="radio"/> 일반적인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math display="block">\text{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times C</math>                     A : 금융투자소득금액                      B :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금융기관 미공제시)                      C : 세율                 </p> </div> <p><input type="radio"/>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세액과 합산신고 하려는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math display="block">\text{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times D] - E</math>                     A :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                      B :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C :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금융기관 미공제시)                      D : 세율                      E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p> </div>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2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

(소득세법 제87조의23, 제87조의24, 같은법 시행령 제150조의30, 제150조의31)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및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①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②환급세액이 있는 자, ③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④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li> </ul> </li> <li>○ (방법)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li> </ul> </li> <li>□ 확정신고 및 납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li> </ul> </li> </ul> </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87조의25, 같은법 시행령 제150조의32, 제150조의33, 제150조의34)

가. 개정취지

-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무자의 무신고</li> <li>○ 예정신고,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오류</li> <li>○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오류</li> <li>○ 증빙서류로 신고내용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과세관청은 결정·경정 내용 통지</li>   <li><input type="checkbox"/> 과세관청의 거래명세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내용에 탈루·오류 확인 등을 위해 투자매매업자, 금융투자상품 발행법인 등에 조회 가능</li> </ul> </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소득세법 제87조의26)

가. 개정취지

- 과세관청의 조세징수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li> <li>○ 징수 또는 납부된 세액이 결정·경정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li> <li>○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세의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세액을 환급 또는 다른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li> </ul> </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129조 개정, 제148조의2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의 2~4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및 조세채권 조기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의무자)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대리·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적용</li> </ul> </li> <li>○ (대상소득)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li> <li>○ (기간) 반기별*(1.1.~6.30. / 7.1.~12.31.)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 해지 계좌 : (상반기) 1.1일 ~ 계좌해지일 (하반기) 7.1일 ~ 계좌해지일</li> </ul> </li> <li>○ (세율) 20%</li> <li>○ (납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li> </ul> </li> </ul> </li> <li>□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손실금액)을 기본공제 그룹별로 구분*하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지명의별로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5,000만원 공제) / 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250만원 공제)</li> </ul> </li> <li>② 실지명의별·기본공제 그룹별로 합산된 소득 금액에 금융투자소득 기본 공제 적용</li> </ul> </li> </ul>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㉓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음</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결손금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 세액의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gt; 연간 원천징수세액* → 초과액을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기본공제 적용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 그룹(5,000만원/250만원) 각각에 대해 하나의 금융회사에만 기본공제 적용 신청</li> <li>○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6.30, 12.31)까지 신청(동일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금융회사 변경 불가)</li> </ul> </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6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소득세법 제14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의5)

가. 개정취지

- 납세자가 금융투자소득과 원천징수 세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영수증)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 금액 등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li> <li>*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간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 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li> <li>○ 금융회사등이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등을 정보통신 등으로 통보</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소액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금융투자결손금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금융투자결손금의 경우에도 통지 의무 부여</li> </ul> </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소득세법 제155조의2)

가. 개정취지

- 특정금전신탁 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별 과세가 적용되는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li> <li>○ (대상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배당소득 <span style="padding-left: 40px;">〈추 가〉</span></li> </ul> </li> <li>○ (원천징수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배당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 <span style="padding-left: 40px;">〈신 설〉</span></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및 원천징수 시기 일원화</li> <li>- (좌 동)</li> <li>- 금융투자소득</li> <li>- (좌 동)</li> <li>-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별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 및 납부(§148의2, §148의3 준용)                      ※ §148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손익통산 불가)</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8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

가. 개정취지

-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소득자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 제출의무</li> <li>○ (대상자)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li> <li>○ (대상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 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li> <li style="text-align: center;">〈추 가〉</li> </ul> </li> <li>○ (제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li> <li style="text-align: center;">〈추 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추가</li> <li style="margin-left: 20px;">○ (좌 동)</li> <li style="margin-left: 20px;">- 금융투자소득</li> <li style="margin-left: 20px;">- (좌 동)</li> <li style="margin-left: 20px;">-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9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

(소득세법 제17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

가. 개정취지

-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p> <p>○ 금융투자업자는 다음의 자료를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li> <li>- K-OTC에서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li> <li>-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거래내역으로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의무</p> <p>○ 금융회사등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 장내·외 거래내역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p> <p><input type="checkbox"/> 거래내역 제출의무</p> <p>○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등의 보관의무 자료</p> <p>○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p> <p>○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매매거래에 대한 거래 명세서</p>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명세서</li> <li>○ 장외거래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중개·주선, 대리 명세서 등</li> <li><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이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는 자</li> <li>○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거래소,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등</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부터 적용